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폭염, 한파, 태풍에 대응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명시〉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05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에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을 명시	2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1일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 한파, 태풍 등이 일상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실례로 2023년 6월, 폭염 가운데 노동을 하던 청년노동자가 탈수와 온열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그런데, 현재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그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작업중지권 발동 범위가 좁아 기상이변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근로자가 현행법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폭염 및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에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를 명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폭염·한파·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u>위험이 있는</u>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 <u>위협 또는 폭염·한파·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른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취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¹⁾, 정부(고

1)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

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조치를 미이행하여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행정명령²⁾,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³⁾로 규정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이를 행사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이었던 폭염, 한파, 태풍 등이 계절에

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3)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근로 환경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열악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그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되어 극심한 폭염·한파·태풍 등의 기상 상황에서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근로자의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의 요건으로 ‘폭염·한파·태풍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폭염과 한파 등의 위험상황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중지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상여건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산업재해의 정의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법의 작업중지 요건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기상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 등 개정의 실익 여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의 ‘급박한 위험’은 현행법 제38조의 안전조치 및 제39조의 보건조치 사항 등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험⁴⁾을

4)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격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폭염·한파 및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현행법상 안전·보건조치의 일부 대상이므로 해당 내용만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치 않고,

오히려 개정안의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라는 요건은 ‘급박한 위험’보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